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2004. 10. 14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효율적인 안전 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것임.

I. 개정이유

2000. 1. 8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기준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으로 수방단을 구성하고자 현행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수방단은 통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수방단의 편제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나. 수방단의 단장은 통 민방위대장이 됨(안 제4조제1항).
- 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문맥을 고르게 정비함(안 제7조).

III. 검토의견

1. 관계법령 검토

○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라고 자치법규에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2000. 1. 8일 전문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리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하고, 수방단의 단장은 통·리 민방위대장이 되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수방단의 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 수방단의 조직 및 수방단의 단장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 차원에서 현행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IV. 관계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수방단의 조직기준)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 (편성)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 (민방위대의 편제)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4.3.11 법률 제07188호]
- 제12조 (水防團의 設置·運營)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 제13조 (수방단의 조직기준) ①수방단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리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 ②수방단의 단장은 통·리 민방위대장이 된다.

③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수방단의 편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는 "수방단"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8]

○ 민방위기본법

第18條 (編成) ①民防衛隊는 住所地를 單位로 하는 地域民防衛隊와 職場을 單位로 하는 職場民防衛隊로 編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소규모民防衛隊는 다른 民防衛隊와 統合하여 編成할 수 있다.<改正 1981.3.27>

②第1項의 地域民防衛隊는 統·里를 單位로 하는 統·里 民防衛隊와 市·郡·區를 單位로 하는 市·郡·區民防衛技術支援隊(이하 "民防衛技術支援隊"라 한다)로 區分한다.<改正 1981.3.27>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9조 (민방위대의 편제) ①민방위대에는 대장 밑에 부대장 1인 또는 2인과 필요한 단위대를 둘 수 있다.

②부대장 및 단위대장은 당해 민방위대장이 임명한다.